

## DDA 2005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제6차 WTO 각료회의가 12월 13~18일간 홍콩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기회의 제공 여부와 수출보조 철폐시한, 비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하였다.

각료들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2006년의 협상 과제로 남겨 놓아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요국들의 협상 타결 의지와 타협 여부가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1. 농산물 시장접근분야

각료선언문에서는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수는 4개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우리의 관심 사항인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TRQ 증량 폭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최종안은 당초 1차 수정안에 비해 수입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표현으로 타결되었다.

당초 1차 수정안에서는 ‘관세감축에서의 일탈이 클수록 TRQ를 많이 증량’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의 대우에 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문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을 세 가지 기준(식량안보, 생계 유지, 농촌발전)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지표율 근거로 삼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 2. 국내보조분야

한편 국내보조 분야에 있어서는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 구간수를 3개로 나누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구간별로 EU는 최상위, 미국·일본이 차상위, 여타 국가는 최하위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3. 수출경쟁분야

이번 각료회의에서 미국 등 수출국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full modality가 어렵다면 최소한 수출보조 철폐의 구체적 시한이 명시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EU를 압박하였다(대부분은 2010년을 주장). 그러나 EU는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등 기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에도 적절한 규제가 설정되지 않는 한 수출보조 철폐시기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으며 아울러 국내보조의 New 블루박스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결국 최종 합의는 EU의 CAP 개혁안이 2008~2013년을 이행으로 하고 있어 2013년으로 설정하되 이행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감축을 하는 것으로 절충되었으며 또한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2006.4.30일까지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이외의 수출국들이 협상 진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EU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한편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하였다.

#### 4. 기타 쟁점

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무관세·무쿼타 수입허용 문제는 EU의 제안으로서 이는 면화보조금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최빈 개도국들은 각료회의 이전부터 이번 라운드가 개발 라운드임을 강조하며, 최빈개도국의 모든 품목(농산물과 비농산물 포함)에 대한 선진국의 QF/DF(Quota Free/Duty Free)를 규범화할 것을 주장하며, 선진국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EU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섬유 부문에 약점이 있었으며, 면화보조와 관련해서도 지난 WTO 패널 패소로 현재 대체법안이 의회에서 심의중인 관계로 모든 최빈개도국의 모든 품목에 대한 QF/DF 적용에 반대하였으며 일본도 쌀과 수산물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최빈개도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QF/DF 적용을 둘러싸고 주요국간 입장이 대립하였다.

결국 QF/DF를 규범화(binding)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LDC에 대해서 실시하되 선진국의 일부 민감한 품목을 고려하여 all products 대신 모든 세 번의 97%에 대해서 QF/DF 하기로 절충이 이루어져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산 품목중 최소 97%까지 무관세·무쿼타 수입을 허용하고, 개도국은 자발성에 근거하여 신축적으로 무관세·무쿼타 수입 허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DDA 협상에서는 주요국들이 농업 분야의 쟁점과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 쟁점을 연계하여 논의를 함에 따라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의견

대립 해소 여부가 농업협상의 진전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감축방식으로 스위스공식을 적용하기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다. 문제의 핵심은 개도국에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여기서는 융통성은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적용 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미)을 부여할 것인가였다.

당초 제네바에서 상정한 초안과 홍콩에서 수정한 초안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장한 2개의 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개도국들은 DDA가 개발 라운드임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많은 예외를 주장하였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선진국의 과감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선진국들을 압박하였다.

결국 G-20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하여 최종안에는 스위스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계수에 대한 표현은 삭제되고, 관세 peak, 가공도별 관세 등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되어 당초 표현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또한 농업과 비농업 분야 시장접근에서의 ambition의 수준은 동시에 높게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농업 분야도 시장접근 분야 만큼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 5. 평가 및 향후 일정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DDA 협상 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 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 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콩 각료선언문은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감축폭, 민감품목의 대우 등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논의 진전이 미흡하여 유불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한 대우에서 최종안이 수입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 특별품목(SP)은 현재까지의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적절한 개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 SSM에 대해서 물량/가격기준 모두가 확보된 것은 개도국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을 규제하는 표현이 있는 하나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것은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AM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MS 감축은 물론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보조금의 철폐시기를 설정하고 수출신용 및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것도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 14분기중 모델리티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보다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4월 말에 세부원칙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이후에는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국내 의견 수렴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